

일 러 두 기

이 책자는 2012. 12. 19.(수)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대통령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자금 회계 실무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2012년 9월 현재의 정치자금법규 등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계책임자 등은 이 책자를 항상 참고하여 후원금 모금·기부 및 회계 사무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신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의 파일 및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정보광장 - 정치자금정보 - 정치자금자료」 방에 게시되어 있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정치자금의 이해

- 1. 정치자금의 개념7
-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기본원칙7
- 3.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유의사항7

제2장 후원회 제도

- 1. 후원회의 정의13
- 2. 후원회의 등록13
- 3. 후원회의 회원15
- 4.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16

제3장 후원금의 모금·기부

- 1. 후원금이란19
- 2. 후원금의 모금19
- 3. 모금의 고지·광고 등20
- 4.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22
- 5.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25
- 6.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26
-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27
- 8.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28

제4장 후원회 회계실무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33
2.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34
3. 예금계좌 개설·변경 신고	34
4. 회계장부의 비치	35
5.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및 과목해소	36
6.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구비·보관	39
7.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	40

제5장 후원회의 회계보고

1. 보고대상 및 기한	45
2. 보고사항	45
3. 회계보고서 작성절차	46
4.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47
5.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51
6. 회계보고내역의 공개	51
7. 회계보고내역의 열람 및 사본교부	52
8.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53

부 록

1. 작성예시 목록	57
2. 작성예시	59

제 1 장 정치자금의 이해

1 정치자금의 개념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3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유의사항

1. 정치자금의 개념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 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자는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받아야 함.
- 라. 1회 5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마.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바.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음.

3.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유의사항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회계책임자만 수입·지출 가능

1) 원칙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자가 아니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없음.

2) 예외

-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음.

회계사무보조자

- 회계사무보조자란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정치자금지출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를 말함 [작성예시 1]
※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지출의 대강내역이란 지출의 목적과 금액이 주요항목별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고, 모든 회계처리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됨.
- 회계사무보조자는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위임받기 전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지출할 수 없음.
-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위임 가능한 것은 지출만 해당하므로 회계사무보조자는 정치자금을 수입할 수 없음.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함.
- 회계사무보조자는 교부받은 비용을 지출한 후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해야 함.[작성예시 2]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해당 지출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의 경우에 준하여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해당 지출건의 증빙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3)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 4)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함.

나. 회계장부의 비치·입력(기재) 및 증빙서류 구비

- 1)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수기작성시에는 회계장부)에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이 있는 때마다 계정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내역을 입력(기재)하여야 함.
 ※ 수입·지출의 연월일·내역·금액, 수입제공자 또는 지출 받은 자의 성명(법인·단체명)·주소·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직업(업종)·전화번호
- 2) 정치자금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별·과목별로 그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각의 영수증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회계장부의 ‘영수증 일련번호’와 일치시켜야 함.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확인·조사에 응할 의무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위원·직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제 2 장 후원회 제도

1. 후원회의 정의

2. 후원회의 등록

3. 후원회의 회원

4. 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1. 후원회의 정의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의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의 등록

가. 등록신청

1) 등록신청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함)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작성예시 3]

2) 등록신청사항

후원회의 명칭·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3) 구비서류

후원회 등록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 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작성예시 4~9]

나. 후원회의 명칭·사무소 설치

1) 후원회의 명칭: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2) 사무소 설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는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다.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후원회의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제한이 없음.

라. 유의사항

1) 후원회 지정서[작성예시 7]

대통령후보자등은 후원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의 제정, 대표자 선임 등 내부기구가 구성되고 후원회로서 제반 구성요건(등록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후원회 지정을 하여야 함.

2) 정관 또는 규약[작성예시 4]

○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명칭·목적 및 소재지
-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 대표자·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은 후원회결성 회의시 그 대의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함.

3) 취임동의서[작성예시 5]

-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의 회원으로서 후원회결성 회의시 선출하여야 함.
-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4) 인영서[작성예시 6]

- 명칭은 당해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
- 회인은 후원회 명칭에 ‘인’자를 붙여 조각하여 날인함.
[예 :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인]
- 대표자 직인은 후원회 명칭에 ‘대표자인’을 붙여 조각하여 날인함.
[예 :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대표자인]

5) 후원회의 회의록[작성예시 8]

- 후원회의 성립·소멸과 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후원회 구성원인 회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결정하여야 함.
- 후원회가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해산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장소, 성원상황과 부의안건처리 등 회의진행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관계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과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마. 후원회 변경등록

- 1) 후원회의 대표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2) 변경등록사항 : 명칭,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인영
- 3) 변경등록신청서 작성은 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작성예시 10]

3. 후원회의 회원

가. 회원의 자격

개인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다음의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 외국인
- 국내·외의 법인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치자금법」 § 51③)

◆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및 교원(정당법 § 22)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 사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나. 회원 관리

- 1)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작성예시 11]
- 2) 후원회는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원명부에 정리하여야 하며, 회원명부·가입원서·탈퇴원서 등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작성예시 12]

☞ 후원회의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 § 48조)

4.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후원인은 하나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 1,0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 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음.

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 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하나,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 48)

제3장 후원금의 모금·기부

- 1 후원금이란
- 2 후원금의 모금
- 3 모금의 고지·광고 등
- 4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 5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 6 정치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 8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

1.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2. 후원금의 모금

가. 모금주체 :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

나. 모금한도액: 27억 9885만원(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5%)

※ 지정권자가 같은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의 모금액을 합하여 모금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모금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모금액이 모금한도에 근접한 경우에는 수시로 예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계좌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후원금 모금방법

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으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 1)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 2)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3)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 4) 그 밖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

지로·ARS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지불결제서비스」에 의한 모금의 경우 정산을 거쳐 후원회 수입계좌로 입금되는 데 일정 시일이 소요(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금이 입금될 수 있음)되므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예금계좌입금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모금의 고지·광고 등

가.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내용 및 방법

1) 고지 내용

- 후원회는 회원 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 다만, 다른 정당·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2) 고지 방법

주 체	고 지 방 법
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함. 이하 같음) ○ 전자우편 ○ 전화자동응답장치 ○ 인터넷홈페이지 ○ 안내장(지로용지 포함) 발송
후원회의 지정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함. 이하 같음) ○ 전자우편 ○ 전화자동응답장치 ○ 인터넷홈페이지 ○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서 정한 당해 선거운동방법

☞ 후원금 모금방법,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방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 45 ②)

나. 광고에 의한 후원금 모금내용 안내

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함.

1) 광고규격

- 신문광고 : 길이 17cm, 너비 18.5cm 이내
- 신문광고 외의 광고 :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2) 의무 게재 사항

광고에는 광고근거(“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광고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함.

3) 횟수 산정

-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봄.

다. 안내장에 의한 후원금 모금내용 안내

1) 안내장의 규격·매수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매 이내

2) 봉투 의무 게재 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함.

3) 발송통수 : 시·도별 2만통 이내

4) 발송방법

-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발송통수 이내에서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소속 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음.

-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배부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배부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함.

☞ 후원금 모금방법,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 45②)

라. 명함에 의한 후원금 모금내용 안내

후원회의 대표자·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후원회지정권자인 후보자와 그 회계책임자는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내용을 담아 알릴 수 있음.

4.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

가.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1) 발급신청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작성예시 13])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하여야 함.

2) 종류·발급신청매수

구분	종류	발급신청매수
무정액영수증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을 고려하여 발급신청
정액영수증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액면가액총액이 당해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 이내에서 발급신청

※ 후원회가 발급받을 수 있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가액총액은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후원회는 일시에 발급받아 과다한 수량을 반납하지 않도록 적정매수를 발급신청 하여야 함.

3) 발급기한: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나. 정치자금영수증 발행·교부

1) 원칙

- 후원회는 후원금을 기부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정치자금법 제17조 2012. 2. 29. 개정).
- ☞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치자금법」 §47①)
- 1회 1만원이하의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음.

무정액영수증 발행방법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10만원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음.

예 시) 135,000원 기부시 : 정액 10만원권 1매 + 무정액 35,000원 또는 정액 10만원권 1매 + 정액 1만원권 3매 + 무정액 5천원

2)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음.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기부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3) 발행·교부방법

- 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함)과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함.

-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기재함.

다. 정치자금영수증 관리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을 비치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수령·발행·반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함.[작성예시 14]

라. 유의사항

- 1) 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 받고 사용할 수 없음.
- 2) 정치자금영수증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됨.
 - ☞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47①)
 -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해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치자금법」§51①)
 - ☞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47①)
 - ☞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무정액영수증의 경우) 또는 액면금액(정액영수증의 경우)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46)
 - ☞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46)

마. 잔여매수 반납

- 1)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함.

[작성예시 15]

- 2) 기한 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총액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

5.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가. 우편(모금 안내장)·예금계좌에 의한 모금의 경우

후원회 수입계좌를 확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마다 「수입계정-후원금」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나.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

1) 직접 모금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으로 모금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수입계정-후원금」에 기재하여야 함.

2) 위임 모금

-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입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입자에게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함.

[작성예시 16~17]

-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 후원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함. 다만, 30일 이내에 선거일이 포함된 경우 늦어도 회계마감일까지 인계하여야 함.
- 수입자는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이 있는 때에는 후원금을 인계하는 때마다 「후원금의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작성예시 18]

-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수입자로부터 후원금을 인수 받은 때마다 그 내용을 정치자금

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입계정 - 후원금」에 기재함.[작성예시 16]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원부,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47조①)

6.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가. 기부한도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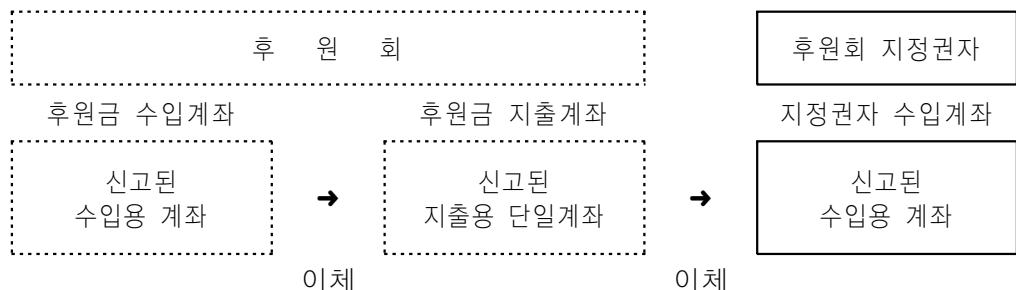
나. 기부방법

- 1)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함.(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음)

※ 부득이하게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에 모금된 후원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음.

※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 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 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 받은 것으로 봄.

- 2)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시 후원회의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지정권자의 수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부하여야 함.



다. 회계처리방법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때마다 그 내역을 「지출계정 - 기부금」에 기재하여야 함.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가. 불법 후원금의 반환

1) 반환대상 및 방법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기부 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 반환할 경우 이미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후원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함.

2) 회계처리방법

반환한 후원금은 「지출계정 - 그 밖의 경비」에 “불법후원금 반환” 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고 반환받은 정치자금영수증과 입금영수증을 합본하여 지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함.

나. 국고귀속 사유 및 절차

1) 사유 및 절차

- 불법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관위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를 중앙 선관위에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중앙 선관위에서 국고금 납부통지가 있는 때에는 통지된 납입계좌에 반환대상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함.[작성예시 19]

2) 회계처리방법

회계책임자가 귀속대상 후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출계정-그 밖의 경비」에 “불법

후원금 선관위 국고귀속”으로 사유를 기재한 후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와 입금증을 합본하여 지출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함.

㉔ 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함.

8.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처분

가. 처분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하기 전까지

나. 처분방법

1) 원칙

-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함.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를 둔 경우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 위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가능.
-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함.

2) 예외

대통령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때 제외)에는 그 후원회와 후원회 지정권자는 잔여 재산을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다. 인계방법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보고시 증빙서류로 첨부, 제출하여야 함.[작성예시 20]

라. 국고귀속

잔여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제 4 장 후원회 회계실무

-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2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3 예금계좌 개설·변경신고
- 4 회계장부의 비치
- 5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및 과목해소
- 6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구비·보관
- 7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

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1인

나. 회계책임자의 겸임 금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2개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를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치자금법」 §51 ③)

☞ 회계책임자의 겸임제한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가 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치자금법」 §51 ③)

다. 회계책임자 직무개시 및 임무

- 1)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중앙 선관위에 신고된 때부터 직무가 시작됨.
- 2) 신고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라. 신고방법

신고자(선임권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후원회 대표자	후 원 회 등록신청시	중 앙 선관위	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작성예시 21] ②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작성예시 22] ③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한 경우 예금계좌 개설신고 생략 가능

2.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가. 신고방법

신 고 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후원회 대표자	회계책임자 변 경 시	중 앙 선관위	①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1부 [작성예시 23] ② 취임동의서 1부 ③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 [작성예시 24·25]

나.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 1) 인계·인수시기: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
- 2) 인계·인수서 작성
 - 회계책임자 변경시마다 3부를 작성,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중앙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시 첨부함.
 - 인계·인수내역 란에는 재산, 정치자금 사용 잔액, 회계장부, 정치자금영수증, 예금통장,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기재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함.
 - 선임권자는 입회자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함.
- 3) 인계·인수방법
 - 인계·인수내역을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명확히 점검·확인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3. 예금계좌 개설·변경 신고

가. 예금계좌 개설

- 1) 계좌명의 : 후원회의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가능
 - 후원인이 금융거래입금증을 면세 영수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이어야 함.
 - 회계책임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시마다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후원회 명의로 개설

※ 후원회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후원회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2) 개설방법

- 정치자금 수입용과 지출용을 각각 개설하거나
- 1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수입용 예금계좌는 2개 이상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출용 예금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하여야 함.

나. 개설신고

신 고 자	신고시기	신고처	구 비 서 류
후원회 대표자	회계책임자 신고시	중 앙 선관위	① 예금계좌 신고서 [작성예시 26] ②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예금계좌 개설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다. 변경신고

- 1)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 선관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작성예시 27]
- 2)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와 함께 예금계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예금계좌 변경신고서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없이 예금계좌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하면 편리함.

4. 회계장부의 비치

신고된 회계책임자는 「후원회 수입·지출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비치해야 할 회계 관련 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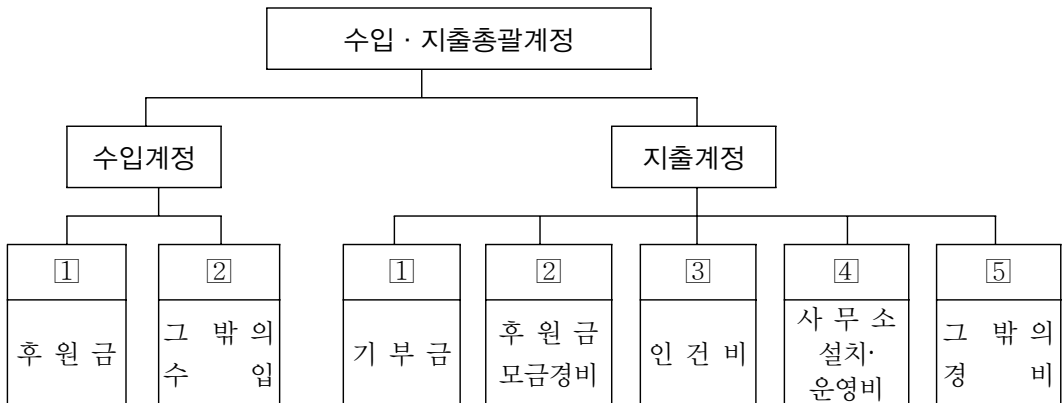
- 후원회의 수입부
- 후원회의 지출부
-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 정치자금 지출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 기 타
 -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포함)
 -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 후원회의 재산관련 서류
 - 정치자금 수입·지출관련 내부 품의서류 등

☞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 46)

5.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및 과목해소

가. 계정과 과목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는 다음과 같이 수입·지출계정을 설정함.



나. 수입계정

수입계정은 수입총괄계정을 두고 그 아래 ① 후원금 ② 그 밖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과목을 설정함.[작성예시 28]

① 후원금

- 후원인(후원회의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서 매 건별로 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및 금액을 기재함.
 - ※ 회계보고시에는 1회 30만원이하(30만원 포함)의 금액을 기부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자별 ‘총건수’와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함.(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상에서 변환 가능)
-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한 금품에 대하여도 기부자별로 기재함.
- 익명 기부의 경우에는 일자·금액을 기재함.
-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평가하여야 함.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② 그 밖의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서 연월일과 금액 및 그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함.

다. 지출계정

지출계정은 지출총괄계정을 두고 그 아래 ①기부금 ②후원금 모금경비 ③인건비 ④사무소 설치·운영비 ⑤그 밖의 경비로 구분하여 과목을 설정함.[작성예시 29]

① 기부금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전 등을 기부일자 별로 기재함.

② 후원금 모금경비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광고료, 안내장 발송비, 정치자금영수증 발송비용,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용 수입인지 구입비 등을 기재함.

③ 인건비

후원회의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활동비, 격려금과 그 밖의 인건비 등을 일자별·수령자별로 기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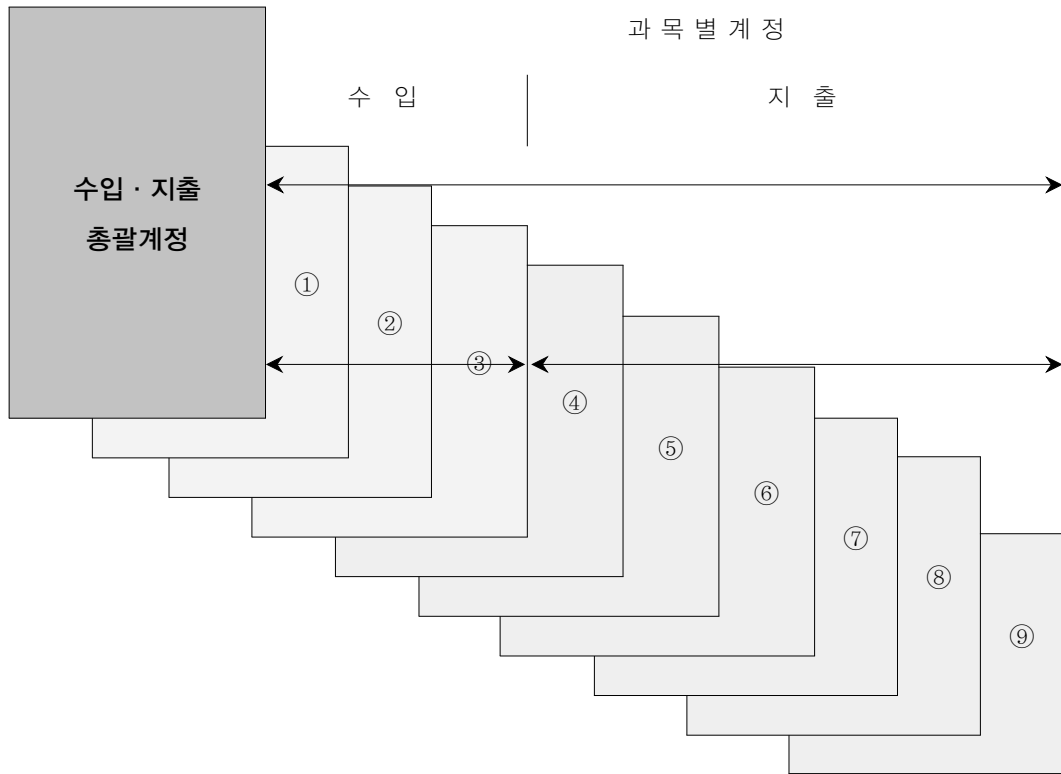
④ 사무소 설치 · 운영비

후원회사무소 임차비용,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기타 공공요금 일체, 그 밖의 사무소 설치 · 운영비로 지출일자별 · 수령자별로 기재함.

⑤ 그 밖의 경비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등 후원회 사무를 위하여 사용한 상기 이외의 지출로서 일자별 · 건별로 기재함.

■ 후원회의 수입 · 지출부 편철 (예시)



☞ 1. 수입 : ①수입계정 ②후원금 ③그 밖의 수입
 2. 지출 : ④지출계정 ⑤기부금 ⑥후원금모집경비 ⑦인건비
 ⑧사무소설치 · 운영비 ⑨그 밖의 경비

6.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구비·보관

가. 수입 증빙서류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 받은 때에는 중앙 선관위에서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영수증원부』 및 예금통장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나. 지출 증빙서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 건마다 수령자별로 아래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받아 목별로 회계장부상의 순서대로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부득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해당 부분에 함께 보관하여야 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함)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기부금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때에는 그 영수증(수령증 등)

2) 후원금 모금경비

금품모금과 관련된 물품 등의 구입 또는 용역비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영수증

3) 인건비

사무직원의 급여·수당 및 여비 등 인건비를 지급한 때에는 수령증 또는 계좌입금내역서, 식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음식점 등의 적법한 영수증

4) 사무소 설치·운영비

-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의 구입 또는 수선비 등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영수증
- 사무소의 임대, 관리비 등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영수증
-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공공요금납부영수증

5) 그 밖의 경비 : 정당한 채주의 수령증·영수증 등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등

-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② ①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 ③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7.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

가. 회계책임자는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그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후원금이 금전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 금융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이란(「정치자금법」 § 37②)

- 「수입의 상세내역」: 수입의 일자·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함.
- 「지출의 상세내역」: 지출의 일자·금액·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함.

- 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매 건마다 수령자별로 영수증 등을 받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영수증 일련번호란”에 증빙번호를 기재하고 영수증은 계정별·과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편철·보관하여야 함.
- 다. 정치자금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되, 지출금액이 1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수표나 체크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1회 50만원이라 함은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의 총액을 말함.

※ 1회 50만원 이하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지출은 실제 지급하는 날에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누어 지출한 때에도 실제 지출이 있는 때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고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 마. 지급대상자가 여럿인 경우 지급대상자별로 지급할 금액이 작성된 출금청구서를 각각 작성하여 인출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인출하여서는 아니됨.
- 바.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며 무통장 입금증만으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사.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의 일자·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A4용지를 횡으로 하여 1면에 적정 매수를 첨부하고 그 하단에 증빙서번호를 기재함.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번호는 수입·지출부의 영수증 일련번호란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 47 ①)

제5장 후원회의 회계보고

- 1 보고대상 및 기한
- 2 보고서항
- 3 회계보고서 작성절차
- 4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 5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 6 회계보고내역의 공개
- 7 회계보고내역의 열람 및 사본교부
- 8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1. 보고대상 및 기한

가.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선 또는 낙선되어 해산하는 경우

구 분	정당추천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후원회 회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후보자후원회	선거일후 20일(2013.1.8)현재로 선거일후 30일(2013.1.18)까지	선거일후 20일(2013.1.8) 현재로 선거일후 40일(2013.1.28)까지

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구 분	해산시기별	
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기간개시일 30일전(2012. 10.27 이 전)에 해산하는 때	선거기간개시일 30일후(2012. 10.28 이 후)에 해산하는 때
	사유발생후 14일 이내	선거일후 20일(2013.1.8)현재로 선거일 후 30일(2013.1.18)까지
후보자후원회	사유발생후 14일 이내	

※ 「정치자금법」 제19조제1항 :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함.

2. 보고사항

- 가. 회계보고서 제출 문서 표지[작성예시 30]
- 나. 후원회의 재산명세서[작성예시 31]
- 다.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작성예시 32]
- 라. 후원회의 수입부(과목별 정치자금 수입부)[작성예시 33]
- 마. 후원회의 지출부(과목별 정치자금 지출부)[작성예시 34]
- 바.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작성예시 35]
- 사. 후원금 기부자 명단[작성예시 36~37]
 - 1)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 2)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 아.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자. 자체 감사기관 감사의견서[작성예시 38]
- 차. 대의기관(수입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작성예시 39]
- 카. 잔여재산 인계·인수서(사유 발생시)[작성예시 20]
- 타.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반납 보고서[작성예시 15]

3. 회계보고서 작성절차

가. 회계장부의 정리 및 대조·확인

- 1) 후원회의 수입·지출부와 과목별 명세서를 확인하여야 함.
- 2) 수입·지출과 관련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등은 사유 발생시 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회계마감일까지는 전체적인 구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회계보고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준비

- 1) 후원회의 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기관의 구성여부와 결원상태 등을 확인하여 감사일정을 확정하여야 함.
- 2)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의 심사·의결 일정을 확정하여야 함.

다. 회계장부의 마감 등

- 1) 마감방법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회계마감일 현재로 수입·지출상황을 확인한 후 수입·지출부를 출력하여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함.
- 2) 수기로 작성한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수입·지출의 총 누계를 기재한 다음 붉은 색의 밑줄을 그어 마감표시를 하고 “마감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함.

라. 회계보고서 작성·감사 등

- 1) 회계보고서 작성
 - ‘4. 회계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함.

2) 후원회의 회계사무에 대한 감사 등 실시

- 회계사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관은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통해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수입·지출내역을 확정하여야 함.

마. 회계보고서 제출

- 1) 제 출 처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2) 보고방법 : 대표자 명의의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작성예시 30]

4.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가. 후원회의 재산명세서[작성예시 31]

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중앙선거위에 회계보고하기 전까지 잔여재산을 처분[작성예시20] 하여야 함. 잔여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구 분	작 성 내 용
토 지	대통령후보자 등 후원회 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건 물	후원회사무소에 한하여 기재함. ※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 란에 기재함.
비 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현 금 및 예 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그 밖의 재 산	각종 임차재산의 임차금액(보증금, 전세금 등), 차입금(변제후 잔액), 예술공예품(도자기, 액자 등), 기타 무형재산 등을 기재함.
수 량	건물의 경우는 면적(m ²)을, 비품의 경우는 보유수를 기재하되 특히 비품의 경우 종류가 많을시 ○○외 ○○점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그 내역을 작성·첨부하고, 기타의 경우 물품은 보유수를 기재함.
내 용	건물의 경우 지반·형(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등)·동수·건평 등을 상세히 기재함.
가 액	회계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현시가(시가산정 불능 시에는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비품의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기재함.

나.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작성예시 32]

- 1)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과목별 총액을 기재함.
- 2) 수입부분의 작성
 - ‘전년도 이월’란에는 『0』으로 기재한다.
 - ‘후원금’란에는 기명과 익명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1회 30만원 초과(30만원까지는 제외) 또는 연간 500만원(500만원까지는 제외)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 :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기재
 - 그 이하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 : 일자별로 그 총건수와 총금액을 기재(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함)
 - ‘그 밖의 수입’란에는 ‘전년도 이월’, ‘후원금’을 제외한 예금이자 등 수입을 기재함.
- 3) 지출부분의 작성
 - ‘기부금’란에는 후원회를 지정한 후보자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기재함.
 - ※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만 기부를 할 수 있음.
 - ‘후원금 모금경비’란에는 금품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안내장 발송비 등)만을 기재함.
 - ‘기본경비’란에는 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 경비를 인건비와 사무소설치·운영비로 구분하여 기재함.
 - ‘그 밖의 경비’란에는 상기 지출외의 경비를 기재함.

다. 수입·지출부[작성예시 33, 34]

- 1) 표지와 내지로 구분·작성하되 내지에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2) 지출연월일·적요 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 일련번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과목별·지출일자별로 부여함.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이라 기재함.

【예 시】

- 기부금 : 기-1, 기-2, ………

- 후원금모금경비 : 후-1, 후-2, ………
- 인 건 비 : 인-1, 인-2 ………
- 사무소설치·운영비 : 사-1, 사-2, ……… …

- 3) 지출일자와 실제 영수증 수령(발급)일자는 동일하여야 함.
- 4) 지출부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일자가 다른 여러 건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됨.

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작성예시 35]

- 1)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말함.
- 2)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는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편철
 - 표지·내지로 구분·작성하여야 함.
 - 과목별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A4용지를 횡으로 하여 1면에 적정 매수를 첨부하고 그 하단 여백에 증빙서의 관리번호를 기재함.
 -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관리번호는 수입·지출부의 「영수증 일련번호」와 일치해야 함.
 - ※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마. 후원금 기부자 명단[작성예시 36, 37]

- 1)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기부자(30만원까지는 제외)와 연간 500만원 초과기부자(500만원까지는 제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회계보고시 보고하여야 함.
 - 2) 후원금 기부자 명단 보고시에는 “1회 30만원 초과기부자”와 “연간 500만원 초과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 ※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기재하여야 함.
- 예시) 1회 600만원을 기부한 기부자는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와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각각 기재되어야 함

바.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1) 수입·지출용으로 사용된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되 회계책임자가 원본대조 확인을 한 후 제출함.
- 2) 보고대상 기간 중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예금통장을 개설·사용한 경우 변경 전 예금통장을 포함, 모든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작성예시 38]

- 1)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서로 인정할 수 있음.
- 2) 감사의견에는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3)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규약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규약에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아.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입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작성예시 39]

- 1) 심사·의결서는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나타내도록 하고,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입기관의 명칭 및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3) 세부내역은 회계보고서 제출하는 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의결서의 내용에 명시하여야 함.

자.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작성예시 20]

잔여재산은 중앙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기 전까지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정당에, 후원회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인계한 후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가. 회계장부 등의 인계

- 1)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와 후원회대표자
- 2) 인계·인수시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 3) 인계대상 : 회계장부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 회계장부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 예금통장
 -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 등

나. 회계장부등 보존

- 1) 보존의무자 : 후원회대표자
- 2) 보존기간 : 회계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3년

다. 보존위탁

회계책임자는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중앙 선관위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음.
 [작성예시 40] 이 경우 위탁 보존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권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반환신청서를 중앙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6. 회계보고내역의 공개

가. 공개방법·대상

- 1) 회계보고를 받은 중앙 선관위는 회계보고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공고함.
- 2) 중앙선관위는 회계책임자가 보고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함.

나. 후원금기부자 명단 공개

중앙 선관위가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도 공개함.

다. 공개된 정치자금기부내역의 정치적 목적 이용금지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 47 ①)

7. 회계보고내역의 열람 및 사본교부

가. 열람 및 사본교부기간

- 1) 회계보고서의 열람기간은 중앙 선관위가 수입·지출보고서 사본을 공고한 날부터 3월간이며, 사본교부기간은 공고한 이후 제한이 없음.
- 2) 누구든지 중앙 선관위에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작성예시 41]

나. 열람 및 사본교부대상 서류

- 1) 열람 대상: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첨부서류
- 2) 사본교부대상: 위 열람 대상 서류
※ 단,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예금통장 사본 제외
- 3)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이 아닌 서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다. 사본교부비용의 부담

- 1) 사본교부비용은 사본교부신청자가 부담하며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 2) 사본교부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7조(비용부담)제1항 별표에 의함.

8.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가. 보고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 1) 공개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2)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이의신청서를 중앙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작성예시 42]

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 보정요구 및 각하

중앙 선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보정을 요구하거나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각하 처리함.

2) 이의신청요건을 구비한 때의 처리

○ 소명자료 제출요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관련사업자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상대방)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이의신청 상대방의 소명자료 제출

이의신청내용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질문 및 자료 확인

중앙선관위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3) 소명결과의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선거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4) 소명결과에 대한 조치

중앙 선거위는 후원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선거위의 질문이나 확인·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민주주의 꽃

선거

부 록

- 1 작성예시 목록
- 2 작성예시

작성예시 목록

구 분	번호	명 칭	페이지
작성예시	1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59
	2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60
	3	후원회 등록신청서	61
	4	후원회 정관	62
	5	후원회 대표자 취임동의서	67
	6	인영서	68
	7	후원회 (지정)·(지정철회)서	69
	8	후원회 결성 회의록	70
	9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75
	10	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	76
	11	후원회 (가입)·(탈퇴)원서	77
	12	후원회 회원 명부	78
	13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79
	14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80
	15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반납보고서	81
	16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82
	17	위임장	83
	18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84
	19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85
	20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86
	2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87

Ⅱ (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Ⅱ

구 분	번호	명 칭	페이지
작성예시	22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88
	23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89
	24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90
	25	인계·인수내역	91
	26	예금계좌 신고서	92
	27	예금계좌 변경신고서	93
	28	과목별 수입부	94
	29	과목별 지출부	96
	30	회계보고서 제출 문서 표지	99
	31	재산명세서	100
	32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102
	33	후원회의 수입부	103
	34	후원회의 지출부	104
	35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105
	36	후원금 기부자 명단(1회 30만원 초과기부자)	106
	37	후원금 기부자 명단(연간 500만원 초과기부자)	107
	38	감사의견서	108
	39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입기관의 심사·의결서	109
	40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	110
	41	(열람)·(사본교부) 신청서	111
	42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112

[작성예시 1]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1. 수입자(회계사무보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박보조	820101-24567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123-4567	

2. 위임내용

위임기간	지출목적	지출의 대강의 내역	지출한도 금 액	지출기간	비고
2012. 9. 23. ~ 9. 28	물품구입	사무용품 구입	2,600,000	9.23 ~ 9. 28	
		사무용 가구 구입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지출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12년 월 일

위임자 회 계 책 임 자 이회계 (인)

수입자 회계사무보조자 박보조 (인)

주 : 본 위임장은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함.

[작성예시 2]

회계사무보조자 정치자금 지출내역서

1. 총 괄

위 임 기 간	위 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9. 23 ~ 9. 28	2,600,000	2,600,000	0	

2. 세부지출내역

연월일	내역	지출액		잔액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호	비고
		금회	누계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직 업 (업 종)	전화 번호		
9.23	사무용품 구입	200,000	200,000	2,400,000	기린아트	123-45-6789	광명시 철산동 20	서비스	124-5978	1	
9.28	가구등 구입	2,400,000	2,400,000	0	서울가구	532-12-5789	광명시 광명동 12	가구도매	324-1257	2	
계			2,600,000	0							

위와 같이 본인이 지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용내역 1부.(별지 첨부시)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통장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경우에만 제출). 끝.

2012년 월 일

제출자 회계사무보조자 박보조 (인)

회계책임자 이회계 귀하

☞ 본 지출내역서를 증빙서류철에 보관·관리하고 그 사본을 회계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함.

[작성예시 3]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	칭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1	전화번호	02-523-1111
대표자	성명	홍길서(한자:洪吉西)	주민등록번호	391205-1234567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1	전화번호	02-270-1234
정관 또는 규약		별첨과 같음		
회원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별첨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직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별지> 1부. 4. 후원회지정서 1부. 5.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 6.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 				
<p>주 : 1.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 2. 회의록은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p>				

[작성예시 4]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정관

2012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라 칭한다. (이하 “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후원회지정 권자 홍길동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정치자금 기부제한 자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자유 의사에 의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가입과 탈퇴)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는 탈퇴원서를 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회원의 제명) ①회원으로서 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 회

제7조(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후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후원회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사업보고의 승인
5.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입기관에 관한 사항
6. 후원회의 감시기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후원회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②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총회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조(총회소집) 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가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표자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총회의 수입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후원회의 대표자가 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대표자 직무대리자의 선출 및 총무 선임

- 5. 업무보고의 승인
- 6. 회원의 제명 결의
- 7.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13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임 원

제15조(대표자) ①후원회에 대표자(회장) 1인을 둔다.

②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대표자의 궐위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총무) ①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무를 둔다.

②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고 대표자를 도와 후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제17조(회계책임자) ①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하며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②회계책임자 사고시에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회계지출만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①후원회의 회계 및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장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제19조(회비)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21조(모금의 제한) 본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상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기부) ①후원회는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법」의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까지 기부할 수 있다.

②본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기부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장 해 산

제23조(해산) ①후원회는 다음 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산된다.

1. 후원회지정권자가 지정을 철회한 경우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4. 기타의 사유발생시 후원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잔여재산 처분)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정치자금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8장 정 관 개 정

제25조(개정)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사항)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작성예시 5]

취 임 동 의 서		
성 명	홍 길 서 (한 자 : 洪 吉 西)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1	
주민등록번호	391205-1234567	
전 화 번 호	주택)02-270-1234	휴대폰)010-1234-5789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대표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성 명 홍 길 서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귀중</p>		
<p>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당해 후원회에 제출함.</p>		

[작성예시 6]

인 영 서	
명 칭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 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대통령(예비)후보자 홍길동후원회인 </div>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인
대표자 직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대통령(예비)후보자 홍길동후원회 대 표 자 인 </div>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대표자인
비 고	

- ㉠ 1. 후원회의 등록시 또는 이미 등록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시 사용함.
2.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 뚜렷하게 붉은 색으로 날인함.

[작성예시 7]

후원회 (지정) · (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칭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사무소의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1	전화번호	02-523-1111	
대표자	성명	홍길서(한자:洪吉西)	주민등록번호	391205-1234567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1	전화번호	02-270-1234
(지정) · (지정철회)연월일		2012년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6조 · 제7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 · (지정철회)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 홍길동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귀중</p>				
<p>주 :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을 기재함.</p>				

[작성예시 8]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결성 회의록

일 시 : 2012년 월 일 00 : 00

장 소 :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기록자 나서기 인

확인자 이점검 인

원본대조필	인
-------	---

식 순

1. 개 회
(성원현황 등 포함)
2. 국민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후원회 정관 채택
6. 대표자(회장) 등 임원 선출
7. 기 타
8. 폐 회

원본대조필

인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설립 회의록

1. 개 회

사회자 :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결성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적회원 총 20명중 18명이 모두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결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사회자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과보고

사회자 : 다음은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진행 경과를 후원회 준비위원인 홍길서 회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서 :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홍길동 후보의 원활한 선거비용조달을 위하여 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원본대조필

인

홍길서 : 지난 3월 15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뜻을 같이하는 20분이 참여하여 오늘 후원회 결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께서 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다음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후원회 결성에 많은 노력을 하신 김의장 회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 전원 박수로 김의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5. 후원회 정관 채택

임시의장 : 그러면 먼저 후원회 정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정관을 검토하고 오셨으리라 보고 정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석 자 : 이의 없습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정관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본대조필

인

6. 대표자(회장) 등 임원 선출

임시의장 : 다음은 정관에 따라 본 후원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와 감사를 선출하고, 총회의 수입기관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운영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원 회원 : 대표자에는 지금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원회설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홍길서 회원을 추천하고, 감사에는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나회계 회원님과 조감사 회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김운영, 이성실, 고노력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의장 : 이후원 회원님으로부터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석 자 : (전원 손을 들면서) 동의합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후원회 대표자에는 홍길서 회원을, 감사에는 나회계, 조감사 회원을, 운영위원에는 이운영, 이성실, 고노력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 그러면, 후원회 대표자로 선출되신 홍길서 회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서 : 부족한 저를 대표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홍길동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 폐 회

사 회 자 : 이상으로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결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본대조필

㉠

[작성예시 9]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명 칭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사 무 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1
전 화 번 호	02-523-1111
[약 도]	

[작성예시 10]

후원회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	칭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전화번호	523-1111	2012. 9.25.	이사
대표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p>「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 · (변경신고를) 합니다.</p> <p>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p> <div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20px;">직인</div>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인영서 1부. 4. 회의록 사본 1부. 5. 사무소 소재지 약도 1부. 						
<p>주 1. “변경내용”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2. “명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함. 3. 인영서는 [작성예시 6] 서식의 <별지>에 의함. 4. 회의록 사본은 「정치자금법」 또는 정관(규약)의 규정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입기관의 의결에 따라 후원회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첨부함. 5. 회의록에는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원본대조필”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p>						

[작성예시 11]

후원회 (가입) · (탈퇴)원서				
성 명	이 후 원 (한자 : 李厚元)	생년월일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00			
직 업 (근무처)	회사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연 락 처	자 택	02-123-5678	휴대폰	010-123-4567
	직 장	02-237-5698	E-mail	clean@korean.co.kr
회비약정	납부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계좌입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금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p>본인은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에 (가입) · (탈퇴)하고자 이에 (가입) · (탈퇴)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가입) · (탈퇴)연월일 : 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이 후 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귀중</p>				
<p>주 1. 회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 외에는 후원회에서 임의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음.</p> <p>2. 회원의 가입 ·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p>				

[작성예시 12]

후원회회원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가입 연월일	탈퇴 연월일	비고
1	홍길동	69.12.12	경기동 광명시 광명동 111	자영업	123-1234			
2	김수로	89.10.29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1	학생	345-2478			
3	정후원	56.01.27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자영업	503-1700			
4	박후원	71.09.11	경기 군포시 산본동 52	회사원	512-1237			
5	이의원	62.12.17	경기동 광명시 광명동 79	지방의원	523-1219			
6								
7								
8								
9								
10								
11								
12								
13								
14								

☞ 회원의 가입·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작성예시 13]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문서번호 :

1.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내역

(단위 : 매)

구 분	기 수 령 매 수			후원회의 사용내역		발급신청 매 수
	전년도 이월	금년도 수령	소 계	발 행	미발행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1만원권	10	10	8	2	10
	5만원권	10	10	1	9	
	10만원권	600	600	600		490
	50만원권					
	100만원권					10
	500만원권					
	계		620	620	609	11

2. 신청일전일까지의 수입·지출총액

(단위 : 원)

수 입			지 출			비 고
전년도 이월액	후원금	합 계	기부금	제경비	합 계	
	50,940,000	50,940,000	40,000,000	10,940,000	50,940,000	

3. 수입인지 : 25,500원 상당

「정치자금법」 제17조제6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함.

[작성예시 14]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 반납대장																	
연월일	적요	구분	수량(발행) 또는 반납							잔 고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소계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2012 9.2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령	매수			300	50	100		450				300	50	100		450
		일련번호			라가 1 ~ 300	마가 1 ~ 50	바가 1 ~ 100						라가 1 ~ 300	마가 1 ~ 50	바가 1 ~ 100		
		금액			3,000	2,500	10,000		15,500				3,000	2,500	10,000		15,500
“	김보조에게 위임	매수			70	10	15		95				230	40	85		355
		일련번호			라가 1 ~ 70	마가 1 ~ 10	바가 1 ~ 15						라가 71 ~ 300	마가 11 ~ 50	바가 16 ~ 100		
		금액			700	500	1,500		2,700				2,300	2,000	8,500		12,800
2012 9.25	나후원에게 발행	매수					2		2				230	40	83		
		일련번호						바가 16 ~ 17					라가 71 ~ 300	마가 11 ~ 50	바가 18 ~ 100		
		금액						200		200			2,300	2,000	8,300		12,600
2012. 9.28	김보조로부터 반납	매수			20		5		25				250	40	88		378
		일련번호			라가 51 ~ 70		바가 11 ~ 15						라가 51 ~ 300	마가 11 ~ 50	바가 11-15 18-100		
		금액			200		500		700				2,500	2,000	8,800		13,300

주: “적요”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 “○○○에게 발행”, “○○○에게 위임” 또는 “○○○으로부터 반납” 등으로 기재함.

[작성예시 15]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반납보고서

문서번호

1. 사용기간 : 2012년 월 일 ~ 2013년 월 일

2. 세부내용

구 분	전년도 이월 및 금년도 수령매수		사 용		잔여매수		
	매 수 (일련번호)	금 액	매 수 (일련번호)	금 액	매 수 (일련번호)	금 액	
무정액 영수증	매 ()		매 ()		매 ()		
정액 영수 증	1만원권	매 () 원	매 () 원	매 () 원	매 () 원	매 () 원	
	5만원권	매 () 원	매 () 원	매 () 원	매 () 원	매 () 원	
	10만원권	300매 (라카 1~300)	30,000,000원	50매 (라카1~50)	5,000,000원	250매 (라카51~300)	25,000,000원
	50만원권	50매 (마카1~50)	25,000,000원	10매 (마카1~10)	5,000,000원	40매 (마카11~50)	20,000,000원
	100만원권	100매 (바카1~100)	100,000,000원	12매 (바카1~10 16-17)	12,000,000원	88매 (바카11-15 18-100)	88,000,000원
	500만원권	매 () 원	매 () 원	매 () 원	매 () 원	매 () 원	
	계	450매	155,000,000원	72매	22,000,000원	378매	133,000,000원

「정치자금법」 제17조제10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월 일 현재까지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잔여매수를 위와 같이 반납합니다.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일련번호는 “매수”란 하단 ()에 기재함.

[작성예시 16]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1. 수임자 인적사항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비고
1	김보조	601003-1234567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40	무직	02-523-1234	

2.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반납 및 후원금 납입내역

(단위:만원)

년월일	적요	구분	교부 및 반납							잔 고							후원금 납입액	비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소계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소계
2012 9.24	교부	매수			70	10	15		95											
		일련번호			라카 1~70	마카 1~10	바카 1~15		-											-
		금액			700	500	1,500		2,700											
2012 9.25	후원금 납입	매수			50	10	10		70			20	5			25	2,000			
		일련번호			라카 1~50	마카 1~10	바카 1~10		-			라카 5~70	바카 1~5			-				
		금액			500	500	1,000		2,000			200	500			700				
2012 9.28	반납	매수			20		5		25											
		일련번호			라카 5~70		바카 11~15		-							-				
		금액			200		500		700											
		매수																		
		일련번호							-							-				
		금액																		
		매수																		
		일련번호							-							-				
		금액																		

주 1. 수임자별로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함.
 2. “적요”란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반납” 또는 “후원금 납입” 등으로 기재함.

[작성예시 17]

위 임 장

1. 위임자

후원회명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대통령(예비)후보자 홍길동후원회	홍길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1	02-523-1234	

2. 수입자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비고
1	김보조	601003-1234567	경기도 광명시광명3동 40	무직	02-523-1234	

「정치자금법」 제16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12년 월 일

위임자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대표자

직인

수입자

김보조 인

[작성예시 18]

후원금의 인계 · 인수서

1. 후원회명 :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2. 인계 · 인수자

인계자 (수입자)	성 명	김보조	주민등록번호	601003-1234567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40	전 화 번 호	02-523-1234
인수자 (회계책임자)	성 명	이회계	주민등록번호	600101-1234567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	전 화 번 호	010-123-4567

3. 인계 · 인수사항

가. 후원금 : 20,000,000원

나.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구 분	무정액 영수증	정 액 영 수 증						합 계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매 수				70	10	15		
일련번호				라가0000 001~ 0000070	마가0000 001~ 0000010	바가0000 001~ 0000015		

다. 미사용 정치자금영수증

구 분	무정액 영수증	정 액 영 수 증						합 계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매 수				20		5		
일련번호				라가0000 051~ 0000070		바가0000 011~ 0000015		

「정치자금법」 제16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한 후원금을 위와 같이 인계 · 인수합니다.

2012년 월 일

인계자

김 보 조 ㉠

인수자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회 계 ㉠

주 1. 인계 · 인수서는 후원금 · 정치자금영수증을 인계 · 인수할 때마다 2부를 작성하여 인계 ·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2. 후원금은 그 금액을 기재하되, 금전이 아닌 물품인 때에는 품명 · 수량 등을 기재함.

3. 인계 · 인수서를 2매 이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 면마다 인계 · 인수자가 각각 간인하여야 함.

[작성예시 19]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내역보고서			
문서번호			
국고귀속대상 후원금내역	납부연월일	금 액(단위:원)	비 고
타인명의로 납부된 후원금	2012. 9. 29.	200,000	
	소 계	200,000	
가명으로 납부된 후원금			
	소 계		
익명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			
불 법 후 원 금	2012. 9.27.	1,000,000	
합 계		1,200,000	
<p>「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제18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후원금)·(불법후원금)의 내역을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이회계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작성예시 20]

후원회의 잔여재산 인계·인수서

1. 인계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홍길서	391205-1234567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1	02-270-1234

2. 인수자

정당·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당	사무총장	나총장	480123-123456 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02-784-123 4

3. 인계·인수사항

재 산 목 록	인 계·인 수 방 법
후원금(1,500,000)	예금계좌 입금

「정치자금법」 제21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13년 월 일

인계자 대통령 (예비) 후보자 홍길서 후원회 대표자 홍길서 인

○○ 당 회 계 책 임 자 나총장 인

인수자 { ○ ○ (공 익 법 인) 대 표 자 ○ ○ ○ 인 }

○ ○ (사 회 복 지 시 설) 대 표 자 ○ ○ ○ 인 }

주 1.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고, 1부는 회계보고시 제출하여야 함.

2. 잔여재산 중 금전은 수표나 예금계좌 입금 그 밖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3. “인계·인수사항”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작성예시 21]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문서번호					
회 계 책 임 자	성 명	이 회 계 (한자 : 李會計)	주민등록번호	600101-1234567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	전 화 번 호	02) 523-6484	
선 임 연 월 일	2012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수 입 용		○○은행			
지 출 용		○○은행			
<p>「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홍길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서).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p> <p>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 대표자임.</p>					

[작성예시 22]

취 임 동 의 서		
성 명	이 회 계 (한자 : 李會計)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	
주 민 등 록 번 호	600101-1234567	
전 화 번 호	02) 523-6484	이동전화) 010-123-4567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이 회 계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귀하</p>		
<p>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함.</p>		

[작성예시 23]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회 계 책 임 자	성 명	정회계(한자 : 鄭會計)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주 소	광명시 광명7동 10	전 화 번 호	02) 523-6485
변 경 연 월 일		2012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 입 용				비 고
지 출 용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변경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홍길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 대표자임.</p>				

[작성예시 25]

인계 · 인수내역

구 분		수량	금액 (원)	비 고
후원회 수입·지출보고서 출력물		1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백업파일		1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50		증빙서류 총매수기재
신 고 된 예금계좌	수입용	1	5,000,000	통장잔액 기재
	지출용			
OO은행, (123-45-678901)				
OO은행, 123-45-678901)				
체크카드(OO은행, 9410-3210-0000-0000)		1		
책상		4	50,000	
의자		2	20,000	
컴퓨터		1	500,000	
⋮		⋮	⋮	
기 타				

Ⓜ 인계 · 인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함.

[작성예시 26]

예금계좌 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변경전	수입용	농협	123-45-000900	
	지출용	농협	123-45-000900	
변경후	수입용			
	지출용			
<p>「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홍 길 서 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p>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 대표자임. 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란은 작성하지 아니함.</p>				

[작성예시 27]

예금계좌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 고	
변경전	수입용		○○은행	123-45-000900	
	지출용		○○은행	123-45-000900	
변경후	수입용		○○은행	999-12-875212	
	지출용		○○은행	999-12-875212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변경신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홍 길 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p>					
<p>주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회 대표자임.</p>					

[작성예시 28]

과목별 수입부

과목명 : 기명후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고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후원금	김갑동	70/01/01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	회사원	02-523-6484	100,000	100,000	
	후원금	이과장	66/06/0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OO상사 판매과장	02-523-6485	400,000	500,000	
	∴	∴	∴	∴	∴	∴	∴	∴	
합 계								1,000,000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과목명 : 익명후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고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익명						100,000	100,000	
	익명						50,000	150,000	
	익명						80,000	230,000	
	∴	∴	∴	∴	∴	∴	∴	∴	
합 계								1,000,000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과목명 : 그 밖의 수입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 고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예금이자	농협	123-45-56789	서울시 광악구 남현동 11	금융	123-4567	1,500	1,500	
	∴	∴	∴	∴	∴	∴	∴	∴	
합 계								1,500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인

[작성예시 29]

과목별 지출부

과목명 : 기부금

(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12. 9. 23	후원회 기부금	홍길동	50/12/24	○○시○○동 654			10,000,000	10,000,000	1
2012. 9. 30	후원회 기부금	홍길동	50/12/24	○○구○○동 654			10,000,000	10,000,000	2
	∴	∴	∴	∴	∴		∴	∴	∴
합 계	-	-	-	-	-		60,000,000	60,000,000	-
내역	영수증 첨부분	-	-	-	-		-	60,000,000	2건
	영수증 생략분	-	-	-	-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과목명 : 사무소설치·운영비

(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12. 9. 23	복사지의 5	(주)경성	654-98- 9876543	○○시○○동 654	문구 제조	123- 4567	120,000	120,000	1
2012. 9. 25	볼펜외 2	학교문구	456-98- 000000	○○구○○동 456	문구 도매	234- 6543	32,000	152,000	생략
2012. 9. 26	책상등 구입	서울가구	546-00- 000000	○○구○○동 546	가구 대리점	543- 2389	150,000	302,000	2
∴	∴	∴	∴	∴	∴		∴	∴	∴
합 계	-	-	-	-	-		302,000	302,000	-
내역	영수증 첨부분	-	-	-	-		-	270,000	13건
	영수증 생략분	-	-	-	-		32,000	-	1건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과목명 : 후원금 모금경비

(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 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12. 9.25	봉투 및 문구구입	(주)경성	654-98- 9876543	○○시○○동 654	문구제조	123-6587	120,000	120,000	1
2012. 9.26	안내문 인쇄비용	전문인쇄	456-98- 000000	○○구○○동 456	인쇄	234-6453	500,000	620,000	2
∴	∴	∴	∴	∴	∴		∴	∴	∴
합 계	-	-	-	-	-		620,000	620,000	-
내역	영수증 첨부분	-	-	-	-		-	620,000	2건
	영수증 생략분	-	-	-	-			-	건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과목명 : 인건비

(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 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12.9.30	후원회 사무소 직원 보수	이직원	70/01/01	○○시 ○○동 54		523-6484	500,000	500,000	1
∴	∴	∴	∴	∴	∴		∴	∴	∴
합 계	-	-	-	-	-		500,000	500,000	-
내역	영수증 첨부분	-	-	-	-		-	500,000	1건
	영수증 생략분	-	-	-	-			-	건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Ⅱ (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Ⅱ

과목명 : 그밖의 경비

(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번호			
2012.9.30	착오입금 후원금반환	나후원	70/12/12	ㅇㅇ시ㅇㅇ동 123	회사원	235- 8932	100,000	100,000	1
∴	∴	∴	∴	∴	∴		∴	∴	∴
합 계	-	-	-	-	-		100,000	100,000	-
내역	영수증 첨부분	-	-	-	-		-	100,000	1건
	영수증 생략분	-	-	-	-			-	1건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인

⊕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작성예시 30]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2013. . . .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 12. 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1부.
 2.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1부.
 3. 과목별 수입부 각 1부.
 4. 과목별 지출부 각 1부.
 5.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6. 후원금 기부자 명단(30만원, 500만원) 각 1부.
 7.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8.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1부.
 9. 대의기관(또는 수입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1부. 끝.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대표자 직인

[작성예시 31]

재산명세서

2013년 월 일 현재

구 분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토 지	후원회사사무소부지	800m ²	삼성동16, 대지	20,000,000	
	소 계	800m ²		20,000,000	
건 물	후원회사사무소	600m ²	삼성동16, 철근 콘크리트조, 단층	10,000,000	
	소 계	600m ²		10,000,000	
주식 또는 유가증권		해	당 없	음	
	소 계				
비 품	복사기등	14점		8,000,000	
	소 계	14점		8,000,000	
현금및예금	현 금		농협 000-00-000	7,690,000	
	소 계			10,900,000	
그 밖의 재산	동 양 화	6점		10,000,000	
	소 계			10,000,000	
합	계			55,690,000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첨부 : 비품내역 부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인

- ㉠ 1. “종류”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소유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후원회사사무소건물(부지)’ 등으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국·공채 등 당해 증권의 명칭, 그 밖의 재산의 경우에는 예술 공예품, 임차보증금 등을 기재함.
2. “내용”란에는 토지의 경우 지반·지목·지적용, 건물의 경우 형(목조, 철근 콘크리트조등)·동수·건평 등을,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의 권면액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3. “가액”란에는 재산의 현시가 (작성기준일 현재)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함.
4. 재산내역을 본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5. “현금 및 예금”은 후원회의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잔액을 기재함.

비 품 내 역

종 류	수 량	내 용	가 액	비 고
복사기	1	선명한 500	1,000,000	
책 상	3	철제양수	600,000	200,000×3
의 자	3		300,000	100,000×3
개인용컴퓨터	2	오보OA 3000	3,000,000	1,500,000×2
프 린 터	2	오보SP 2800	1,000,000	500,000×2
응접세트	1	편안한 SET	600,000	
금 고	1	절대안전 600	500,000	
텔레비전	1	금성 WONDER	1,000,000	
∴	∴	∴	∴	
합 계	14		8,000,000	

⊙ 본 비품내역은 재산명세서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함.

[작성예시 32]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

구분	과 목		금 액	비 고
수 입	전 년 도 이 월		0	
	후 원 금	기 명	86,000,000	
		익 명	3,000,000	
		소 계	89,000,000	
	그 밖 의 수 입		1,000,000	
	합 계		90,000,000	
지 출	기 부 금		60,000,000	
	후 원 금 모 금 경 비		5,000,000	
	기 본 경 비	인 건 비	7,0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302,000	
		소 계	7,302,000	
	그 밖 의 경 비		17,698,000	
합 계		90,000,000		
잔 액			0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작성예시 33]

표 지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보고

후 원 회 의 수 입 부

회계책임자 정회계 인

내 지

과목명 : 후원금

(금액단위 : 원)

연월일	수입을 제공한 자						금 액	누 계	비 고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2012. 9. 23	후원금	11건					500,000	500,000	
2012. 9. 25	후원금	이과장	66/06/0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OO상사 판매과장	02-523-6485	400,000	900,000	
2012. 9. 29	후원금	6건					100,000	1,000,000	
	∴	∴	∴	∴	∴	∴	∴	∴	
합 계								1,000,000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인

⊕ 1회 30만원 이하(30만원 포함)의 금액을 기부한 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란에 “총건수”만 기재함.

[작성예시 34]

▣ 표 지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보고	
후 원 회 의 지 출 부	
회계책임자 정회계 ㉠	

▣ 내 지

과목명 : 사무소설치·운영비

(단위 : 원)

연월일	지출을 받은 자					금 액	누 계	영수증 일련 번호
	내역	성명(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2012. 9. 23	복사지외 5	(주)경성	654-98- 9876543	○○시○○동 654	문구제조	120,000	120,000	1
2012. 9. 24	불펜외 2	○○○	456-98- 000000	○○구○○동 456	문구도판매	32,000	152,000	생략
2012. 9. 25	의자1	○○○	546-00- 0000000	○○구○○동 546	가구 대리점	150,000	302,000	2
⋮	⋮	⋮	⋮	⋮	⋮	⋮	⋮	⋮
합 계	-	-	-	-	-	302,000	302,000	-
내역	영수증 첨부분	-	-	-	-	-	270,000	13건
	영수증 생략분	-	-	-	-	32,000	-	1건

작성연월일 :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 영수증 첨부분 및 생략분 란에는 각각의 총건수를 기재함.

[작성예시 35]

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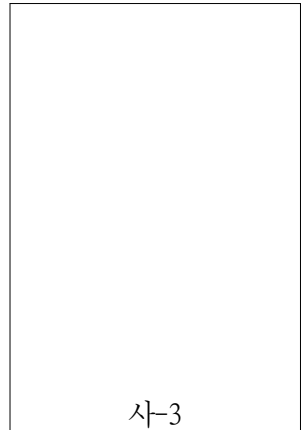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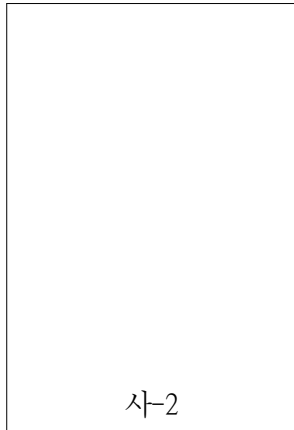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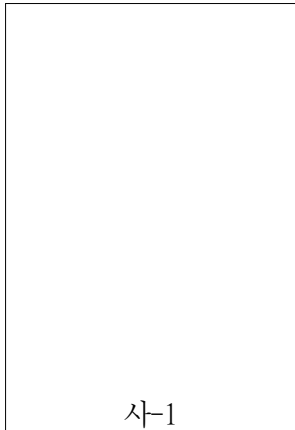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보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보고자 : 회계책임자 정회계 인

내 지

[과목명 : 사무소설치·운영비]



- 1. 영수증의 크기에 따라 1면(A4용지사용)에 적정매수를 첨부하여야 함.
- 2. 증빙서 번호는 지출부 영수증일련번호란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지출과목별·지출일자별로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
- 3. 증빙서류는 축소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함(축소한 경우 영수증을 알아보기가 어려움).

[작성예시 36]

후원금 기부자 명단

【구분 :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기 부 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	○○○○○○	○○시 ○○동 123	□□기업 과장	031- 123-1234		400,000	
◇◇◇	○○○○○○	○○시 ○○동 3-1 ○○아파트 ○동○호	(주)◇◇ 전무	031- 321-4321		500,000	
□□□	○○○○○○	○○시 ○○동 112 ○○빌라 ○호	○○은행 부장	02- 456-7890		1,000,000	
△△△	○○○○○○	○○시 ○○동 2-3 □□아파트 □동 □호	△△산업 재무부장	02- 543-2109		3,000,000	
∴	∴	∴	∴	∴		∴	

「정치자금법」 제40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는 “구분”란에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작성예시 37]

후원금 기부자 명단

【구분 :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

기 부 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	○○○○○	○ ○ 시 ○ ○ 동 3123	○ ○ 은행 부장	031) 123-1234	2012. 9. 24	5,400,000	
◇◇◇	○○○○○	○ ○ 시 ○ ○ 동 11 ○ ○ 아파트 ○ 동 ○ 호	(주)◇◇◇ 전무	031) 321-4321	2012. 9. 25	5,500,000	
□□□	○○○○○	○ ○ 시 ○ ○ 동 2-3 □ □ 아파트 □ 동 □ 호	△ △ 산업 재무부장	02) 543-2109	2012. 9. 26	4,500,000	
△△△	○○○○○	〃	〃	〃	2012. 9. 27	800,000	
▲▲▲	○○○○○	○ ○ 시 ○ ○ 동 12 ○ ○ 아파트 ○ 동 ○ 호	▼ ▼ 산업 (주)대표	053) 924-7654	2012. 9. 28	3,000,000	
〃		〃	〃	〃	2012. 9. 29.	1,500,000	
〃		〃	〃	〃	2012. 9. 30	1,000,000	
		∴	∴	∴		∴	

「정치자금법」 제40조제3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회계책임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작성예시 38]

감 사 의 견 서 ①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우리 후원회의 2012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일까지의 회계처리내역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 . . . ~ 20 . . . ②

나. 감사대상

- 재산상황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

2. 감사의견 :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 ③

3. 특기사항 : 없음

2013년 월 일

감 사 자 ④

(직 위) 감사

(주 소) 광명시 광명동

(성 명) ○ ○ ○ 인

㉞ ①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관·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서로 인정할 수 있음.

② 감사기간은 감사대상기간이 아니라 회계보고서를 실제로 감사한 기간을 기재함.

③ 감사의견에는 후원회의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 및 동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 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④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규약상에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작성예시 39]

① 원본대조필 인

재산 및 수입 · 지출상황 등의 심사 · 의결서^②

1. 의결주문

「정치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우리 후원회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및 결산내역(내역별첨)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의결한다.

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기간 : 20 . . . ~ 20 . . . 까지

나. 재 산 : 0원

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 수 입 : 90,000,000원
- 지 출 : 90,000,000원
- 잔 액 : 0원

2013년 월 일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 운영위원회^③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 인^④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 인

직위: 운영위원 성명 : ○ ○ ○ 인

2. 참고사항^⑤

가.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1부

나. 심사보고서 1부

- ☞ ① 사본작성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후원회대표자 등)의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② 의결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의결서로 인정할 수 있음.
 ③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입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④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
 ⑤ 세부내역은 회계보고서 제출하는 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작성예시 40]

회계장부 등 보존위탁 신청서

1. 보존위탁대상 회계보고서

가. 명 칭 :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장부 등

나. 소속정당명 :

2. 보존위탁 내역

보존위탁 서류명	수량(권, 페이지)	비 고
·회계보고서	1권	
·회계장부	1권	
·지출증빙서류	5권	

2012. 12. 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관련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장부 등 서류의 보존을 「정치자금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위원회에 위탁합니다.

붙임 : 보존위탁 서류 부. 끝.

2013년 월 일

선 임 권 자 홍 길 동 (인)

회계책임자 정 회 계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작성예시 41]

(열람) · (사본교부) 신청서		
구 분	(열람) · (사본교부) 대상	비 고
열 략	대통령(예비)후보자 홍길동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열람일시 :
<p>「정치자금법」 제4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1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갑 을 병 (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주 소 : 광명시 광명3동 777</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p>주 1. “구분”란에는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구분하여 기재함. 2.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이 신청서의 뒷면에 첨부함. 3. 위 열람 또는 사본교부신청은 회계보고를 받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함. 4. “열람 · 사본교부 대상”란에는 “재산상황”, “수입 · 지출내역”, “첨부서류” 중 원하는 서류를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기재함.</p>		

[작성예시 42]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	성명	갑을병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직업	정치인	주 소 (전화번호)	광명시 광명3동 777
이 의 신 청 대 상 회 계 보 고	대통령(예비)후보자홍길동후원회의 회계보고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년 ○월 ○일 지출부에 기재된 금액 및 지출처가 영수증에 기재된 내역과 다름.			

「정치자금법」 제42조제6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2013년 월 일

신 청 인 갑을병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1. 이의신청은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음.
2. “이의신청대상 회계보고”에는 ‘○○○의 회계보고’라고 기재함.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2012년 8월 일 인쇄

2012년 8월 일 발행

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인쇄 :
